



#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안

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-333호

「축산법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8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

##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악성 가축전염병 질병으로부터 우리축산업을 보호·관리하기 위하여 축산업 등록대상을 기존 4개 축종(소, 돼지, 닭, 오리)에서 기타가축 8개 축종(산양, 면양, 사슴, 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, 타조) 사육농가까지 확대하고, 부화업·종축업의 축산업 등록 시 갖춰야 할 시설·장비 기준을 강화하여 전염성 가축질병 발생시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축산업의 등록대상 면적 강화 및 등록대상 확대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질병으로부터 우리축산업을 보호·관리 (안 제13조)
- 현재 소사육 농가의 등록대상 면적을 현행 300㎡초과에서 50㎡초과로 강화(제13조 1호)
  - 축산업 등록대상을 4개 축종(소, 돼지, 닭, 오리)에

- 서 기타가축(산양, 면양, 사슴, 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, 타조) 사육농가까지 확대(제13조 5호 신설)
- 나. 부화업·종축업의 축산업 등록 시 갖춰야 할 시설·장비 기준을 강화하여 가축전염성질병 차단 (안 제14조 제2항 별표1)
- 부화업은 종란 훈증소독 시설, 종돈업은 담장설치, 농장밖 상하차대 설치, 후보돈 격리사 별도 설치, 종계업·종오리업은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, 종란보관실 설치 등
- 다. “가축사육면적당 적정사육두수”를 준수하지 않고 밀집사육 할 경우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축산업 등록의 실효성 확보(안 제14조 제2항 별표3)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(축산정책과, 전화 02-500-2047, 모사전

송 02-507-3966, E-mail: kwonws99@korea.kr)에  
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  
 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
 (<http://www.mifaff.go.kr>) 「정보광장-법령정보-입법  
 /행정예고」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  
 유)

나. 성명 및 주소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, 대표자 성  
 명 및 주소)

### 축산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

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13조**(축산업의 등록 대상) 제1호 중 “300제곱미  
 터”를 “50제곱미터”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  
 설한다.

5. 가축사육시설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기타  
 가축(산양, 면양, 사슴, 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, 타  
 조)사육업

[별표1] “축산업의 등록기준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 
 다.

축산업의 종류의 부화업의 시설·장비 등 중 제6호를  
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종란 훈증소독시설을 설치할 것

종축업 중 종돈업의 시설·장비 등 중 제2호를 다음과  
 같이 한다.

2. 종돈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환  
 기시설을 설치할 것

종돈업의 시설·장비 등 중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 
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담장을 설치할 것

6. 상하차대를 농장밖에 설치할 것

7. 후보돈 격리사를 별도 설치할 것

8.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  
 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출 것

종축업 중 종계업의 시설·장비 등 중 제2호를 다음과  
 같이 한다.

2. 종계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  
 열 및 환기시설을 할 것

종축업 중 종계업과 종오리업의 시설·장비 등 중 제4  
 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

5. 종란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

6.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  
 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출 것

가축사육업의 시설·장비 등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 
 신설한다.

3.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  
 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출 것

### 부칙

**제1조**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 
 제14조 제2항 [별표1]중 신설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 
 경과한 날부터 실시한다.

**제2조**(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  
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별표 1

축산업의 등록기준(제14조제2항 관련)

| 축산업의 종류 | 시설·장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부화업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부화장을 갖추는 것</li> <li>2. 부화장에는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할 것</li> <li>3. 부화실과 병아리방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</li> <li>4. 부화실과 병아리방에는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</li> <li>5. 부화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화장을 계사(鷄舍)와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할 것</li> <li>6. 종란 훈증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&lt;신설&gt;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란집하업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계란집하장을 갖추는 것</li> <li>2. 계란집하장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</li> <li>3. 계란집하장에는 다음 각 목의 장비를 설치할 것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환기시설</li> <li>나. 계란을 포장할 수 있는 장비</li> <li>다. 계란의 무게를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선별기</li> <li>라. 집하된 계란을 운반할 수 있는 장비(예: 지게차·컨베이어시스템 등)</li> </ul> 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종돈업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종돈사육시설을 갖추는 것</li> <li>2. 종돈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</li> <li>3. 종돈사육시설에는 종돈분만시설·종돈포유시설 및 종돈육성시설을 벽·킨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</li> <li>4. 종돈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돈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돈 및 번식용 씨돼지의 사육시설을 양돈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에 사용되는 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할 것</li> <li>5. 담장을 설치할 것 &lt;신설&gt;</li> <li>6. 농장 외부에 상하차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것 &lt;신설&gt;</li> <li>7. 후보돈 격리사를 별도 설치할 것 &lt;신설&gt;</li> <li>8.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추는 것 &lt;신설&gt;</li> </ol> |
| 종계업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종계사육시설을 갖추는 것</li> <li>2. 종계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 및 환기시설을 할 것</li> <li>3. 종계사육시설에는 종계의 품종별,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·킨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</li> <li>4.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&lt;신설&gt;</li> <li>5. 종란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 &lt;신설&gt;</li> <li>6.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추는 것 &lt;신설&gt;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종오리업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추는 것</li> <li>2. 종오리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. 다만, 종오리 사육시설의 바닥은 흙으로 할 수 있다.</li> <li>3. 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오리의 품종별,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·킨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</li> <li>4.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&lt;신설&gt;</li> <li>5. 종란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 &lt;신설&gt;</li> <li>6.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추는 것 &lt;신설&gt;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축사육업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가축사육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이거나 당해 가축사육시설에 환기시설을 갖추는 것</li> <li>2. 양계업 중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부화용 알을 생산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육용 씨수탉 및 산란용 암탉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. 다만, 당해 사육시설의 바닥은 흙으로 할 수 있다.</li> <li>3.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추는 것 &lt;신설&gt;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과태료부과기준(제27조 관련)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법조문       |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|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회             | 2회  | 3회 이상 |
| 1.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6조제1항제1호 | 20             | 100 | 200   |
| 2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6조제1항제2호 | 50             | 200 | 300   |
| 3.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6조제1항제2호 | 10             | 50  | 200   |
| 4.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| 법 제56조제1항제3호 | 100            | 200 | 300   |
| 5. 법 제22조제4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| 법 제56조제1항제4호 | 10             | 100 | 200   |
| 6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6조제1항제5호 | 100            | 200 | 300   |
| 7.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6조제1항제6호 | 10             | 50  | 200   |
| 8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| 법 제56조제1항제7호 | 10             | 50  | 200   |

<비고>

1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.
2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